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12048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이효림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박종강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2,580,120원 및 그중 62,348,300원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19. 6. 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9.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

국(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2010. 12. 29.	90,000,000 (61,965,000 으로 변경)	2011. 12. 28. (2019. 12. 20.까지로 연장)	일반자금대출	2010. 12. 31.	100,000,000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9. 1. 11. 국세채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2019. 4. 3. 최종 부실처리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 합계 62,348,300원(보증원금 61,965,000원 + 보증 이자 383,3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231,82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9. 1. 29.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9. 1. 29. 접수 제7985호로 2019. 1. 29.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부천시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원고에게 62,580,120원(이 사건 보증 대위변제금 62,348,300원+채권보전비용 231,82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62,348,3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5.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6.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조건부·기한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E기관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인 2019. 1. 29.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전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피고 A과 D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체결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2) 피고 A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7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080,277,500원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1.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역시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1,080,277,5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를 훨씬 초과한 1,438,908,66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에도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3) 2019. 1. 11. 피고 A이 국세채납으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그 뒤 2019. 5. 20. D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사후구상금 채권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1,080,277,500원, 소극재산은 1,438,908,66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1. 2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처분하였으며, 그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 A으로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피고 A이 거래처인 피고 B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공한 담보로서 당시 피고 A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책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신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 3,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 대금 채무가 약 100,000,000원에서 130,000,000원 상당이었던 사실, ② 그런데 피고 A이 피고 B에 설정해 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에 불과한 사실, ③ 이후 2019. 6.경 피고들 사이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0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에 이르는 데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100,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 외에 향후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불과 5개월 후 피고들 사이의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담보제공에 상응한 계속적 물품공급의 실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기보다는 기존의 대금채무 등의 담보를 위하여 이를 마쳐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나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피고 A과 8년간 물품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그 물품대금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전혀 제공받지 않았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100,000,000원에서 130,000,000원 상당에 이르자 비로소 물품대금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자금난에 빠져있는 등 재산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물품대금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 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 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B이 37,363,55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B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지급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미

부동산 목록

1. 부천시 G 대 249.2m².

2. 부천시 G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장

지층 170m²

1층 115m²(공장)

55m²(주차장)

2층 170m²

3층 170m²

4층 170m²

5층 149m²

옥탑 19.5m²

(이상 A 소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관할). 끝.

채권 목록

피고 주식회사 B이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H 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9년 1월 29일 접수 제798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20. 6. 25.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 금 37,363,558원 및 그 이자채권. 끝.